第143回國會 (閉 會 中)
第5共和國에있어서의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第5號(附錄3)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8月12日(金)
場 所 飛龍齋

飛龍齋現場調査

飛龍齋現場調査

(11時35分)

○7837부대장 박영환 인사드리겠읍니다. 飛龍齋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부대장 朴准將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수행한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전에 통보하고 위원님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전부 그냥 들어오시도록 지시했는데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여기는 비룡대라고 보도되고 있읍니다만 저희는 "비룡제"라고 하고 있읍니다.

현재 관리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간단한 현황보고를 드리고 시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특별히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여기는 완전한 군사시설 안입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은 건물 외부에는 좋습니다만 건물 내부는 제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내때 말씀드리겠읍니다만 1층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귀빈께서 전체 다 사용하시던 것을 지난 6월에 해제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2층은 현재 전용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대한 것은 1층을 보시면 다 알수 있읍니다. 저희 임무수행상 1층을 보시고 2층에 대해서는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金奉旭委員 양해란 보지 말라는 말 아닌가?

○7837부대장 박영환 시설은 1층과 똑같습니다.

○金東周委員 현재 1층은 박장군이 사용하고 있나?

○7837부대장 박영환 아니다. 군에서 출장오는 장군들이 사용한다. 이것은 내 책임하에서 사용토록 허가되어 있으나 2층은 계속 귀빈께서 사용토록 되어 있다.

○구지구대장 배명용 본 건물은 84.1.10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12.20에 완공 당 부대가 84.9.25 인수하여 금년 6월부터 2층을 제외하고 국군휴양시설로 개장 운영

대지 : 5540평

건평 : 본관 287평 부속관 107평

〈시설구조현황〉

1층 : 170평

접견실, 접견예비실, 연회장, 주방시설, 기타 부속실

2층 : 117평

거실, 주침실, 식당, 간이주방, 예비침실

부속관 : 107평

차량·운전원대기실, 보일러실

88년도 시설 사용방침

2층을 제외한 전시설은 주요 지휘관 회의 및 식사시에 사용하고 출장 장군의 숙소로 이용

(현황보고 끝)

○金奉旭委員 본 건물 준공이후 주위 일대를 개보수 및 신축 금지한 법적 근거는?

○7837부대장 박영환 국방부로 확인해 본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함.

금년 5월부터 해제한다는 대전시의 통보가 있었다고 함.

○金奉旭委員 2층을 삼가해 달라는 이유는?

○7837부대장 박영환 2층은 전용침실밖에 없음.

○金奉旭委員 (충남도지사에게 자료 요구) 주위 건물에 대한 신축·개보수를 금지시킨 날짜와 그 범위 그리고 법적 근거

○朴 實委員 2층을 개방 못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가?

○7837부대장 박영환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보안상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임.

○孫周恒委員 총 공사비는 얼마였나?

○7837부대장 박영환 조달본부에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름.

○金東周委員 군사시설 관리는 전부 군에서 하는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군사시설지역이므로 당연함.

○金東周委員 충남도비는 얼마나 들어갔나?

○忠南道知事 沈大平 그런 것 없음.

○金東周委員 정원에는?

○忠南道知事 沈大平 전혀 없음.

○金東周委員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

○忠南道知事 沈大平 청와대에 근무했음.

○金東周委員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군?

○忠南道知事 沈大平 일반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시설임.

○崔戊龍委員 군시설이란 무엇을 뜻하나?

○忠南道知事 沈大平 군용지내의 시설을 뜻함.

○崔戊龍委員 군용시설에 대한 내역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그것은 내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있는 복지단장이 하는 것임.

○金重韓委員 비룡재를 군휴양시설지내에 건축한 목적과 사용용도 그리고 사용량은 얼마인가?

○7837부대장 박영환 공식적인 근거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께서 오실 때 대전에 있는 관광호텔을 사용하다 보니 주민통제와 호텔이용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러던 차 아웅산 사건을 계기로 군용시설내에 비룡재를 짓지 않았나 추측함.

○委員長 李基澤 대통령이 몇 번 주무셨나?

○7837부대장 박영환 6번 사용했음.

○金顯煜委員 옆에 있는 육군휴양소는 언제 생겼으며 주변 대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

○7837부대장 박영환 54년도부터 군 정양원으로 가지고 있었음. 2만여평되며 그 중 4분의1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金顯煜委員 침실은 몇 개나 되는가?

○7837부대장 박영환 60개쯤 됨.

○金東周委員 개발제한 지역은 언제 설정해서 언제 풀렸는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개발제한지역이 아니라 군사보호지역이다. 원래 군용시설의 500미터 이내에 시설할 경우는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 과정에서 협의를 제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李聖浩委員 500미터라면 2만평 전부인가 저것만인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실무자에게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음.

○金 炫委員 81년도에 시가화 조정지구로 했다가 88.4.4자로 그것을 완화시켰다. 시가화 조정지구로 묶은 것이 여기까지 잠식되었을 뿐이다.

○金東周委員 본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忠南道知事 沈大平 대전시에 790만 평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부 도시계획을 했다.

○金奉旭委員 이 주위가 관광단지인 것은 틀림 없지요?

○忠南道知事 沈大平 유성은 온천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바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임.

○金奉旭委員 대통령이 비룡재를 이용하실 때 접견실에서 맞이한 민간인들은 누구인가?

○7837부대장 박영환 통상 지역기관장들을 초청하거나 필요한 분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인원은 모름.

○盧武鉉委員 2층의 비공개와 촬영금지문제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군사적 이익이 상충된다면 어느 정도의 군사적 이익이 있는가?

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었는가?

관리인원과 예산은?

이 시설을 인수하면서 정말로 재산의 가액

에 대한 평가가 없었는가?

○7837부대장 박영환 그것은 정말이다.

○洪鼎杓委員 박장군 준비할 동안에 지사에게 묻겠다.

비룡제에 대하여 충남도에서 단돈 10원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그렇습니다.

○洪鼎杓委員 이 시설안에 귀빈이 오셨을 때 운영비나 경비 등등을 지방비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나?

○忠南道知事 沈大平 없다.

○洪鼎杓委員 건축 당시에도 지원한 사실이 없는가?

○忠南道知事 沈大平 지방행정관서에서는 국가시설의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洪鼎杓委員 국가의 수반이 와서 거하시는 곳인데 보안상 도에서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이면을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뜻이다. 그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5공비리특위에 내 놓으시오.

○委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질문에 답하시오.

○7837부대장 박영환 군사시설 보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에는 보안규정과 규칙이 있음.

○盧武鉉委員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그런 근거라도 내놓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2층은 공개할 것인가 못하는가?

○7837부대장 박영환 1층은 제 권한으로 공개하지만 2층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委員長 李基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을 묻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박장군은 이 중요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국정조사법에 의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여기에 와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 박장군의 권한은 그 이후의 문제다. 왜 비룡제를 조사대상을 했는지는 박장군이 잘 알 것이다. 이것은 양해를 구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으니 빨리 공개하고 촬영하도록 하라.

○7837부대장 박영환 나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 공개하겠으나 촬영은 안되겠다.

○盧武鉉委員 무슨 규정에 의해서인가?

○金 炫委員 지난 6월8일 국회에서 참모총장이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지시했으니 걱정마시고 내려 가셔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의원 자격으로 보신다면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하는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박장군 말씀이 윗 분의 지시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참모총장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닌가?

○7837부대장 박영환 1층은 제 재량에 속하지만 2층은 귀빈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많은 사람에게 내부가 공개되면 임무수행이 어려워진다.

○金 炫委員 틀림없이 공개하도록 했다고 속기록에 나오는데 정말로 지시를 못 받았는가?

○7837부대장 박영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임.

○金重權委員 문제는 보도진에게 허용하느냐 여부다. 박장군은 엄격한 명령에 복종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전화로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하라.

○趙昇衡委員 규정이 있으면 규정의 번호와 호수도 알아오라.

○委員長 李基澤 우리는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여기에 왔다. 조사는 촬영까지를 다해야 한다. 사진기자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 만약에 거부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임을 밝혀둔다. 전화하라.

(12時10分 中止)

(12時37分 繼續)

○7837부대장 박영환 점심시간이라 연락이 안된다. 지휘관인 내 단독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방하겠다. 사진 촬영 문제는 위원장께서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12時38分)

○出席委員

李基澤	金重權	金重緯
金顯煜	朴進球	徐廷華
安乘珪	梁慶子	李聖浩
李廷武	張慶宇	黃潤錤
金奉旭	朴實	孫周恒
林春元	趙昇衡	許萬基
姜信玉	金東圭	金東周
金奉祚	盧武鉉	金鍾植

金　炫　崔戊龍　洪熙杓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李起昆

立法審議官　姜俊浩